

서울특별시의회  
제298회 정례회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1963호)

제안설명



2020. 12. 18.

서울특별시의원 이성배  
(국민의힘 비례대표,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)

○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 힘 비례대표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토지를 출자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으며,

○ 부동산투자회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치하여 저렴한 토지를 임대·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출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,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